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59
----------	-----------

제안일자 : 2023. 02. 27.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4항 중 “취약 거주시설”을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거주시설”로 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범위를 확대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제4항 중 “취약 거주시설”을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취약 거주시설”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중 “취약 거주시설”을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 --- -----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은 용자에 한하고,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및 용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 주택을 말한다.</u></p>
<p>제3조(책무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3조(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u>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용자에 한한다.</u></p> <p>1. ~ 5. (생략)</p>	<p>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u>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용자에 한하고,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및 용자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